

보도시점 2024. 10. 8.(화) 10:00 배포 2024. 10. 7.(월) 16:00

###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금융업권 등이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 논의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
  - 제정법률 공포 이후('24.1월)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QA), 금융권 표준양식 등 시행 준비
    - \*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
-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점검반 운영 등 추진
  -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운영하여 긴밀하게 소통
  - ②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24.10.8일(화)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 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 채무자보호법")은 <sup>①</sup>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sup>②</sup>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sup>③</sup>과도한 추심 제한 <sup>④</sup>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 하여 오는 10.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첫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 체계>

#### 시행상황 점검반

o 반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 구성 :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

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

앙회, 신용정보협회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

#### 실무 점검팀

ㅇ 팀장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o 구성 : 시행상황 점검반의 실무관계자

ㅇ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반에

상정하여 논의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하위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QA) 배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법적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제도와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다고 밝히며.

채무자 스스로가 법률에서 보장한 각종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으므로 10월 17일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은 비롯하여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만건) : ('22년) 13.8 → ('23년) 18.5 → ('24.6월) 9.6 법원 회생·파산 신청(만건) : ('22년) 13.1 → ('23년) 16.2 → ('24.6월) 8.6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등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 별첨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_1_1_1 -1 (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10)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목정민 (02-2100-2613)
(총괄)		담당자	사무관	이소민 (02-2100-2612)
(총괄)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은성 (02-3145-803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홍석린 (02-3145-8270)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담당자	팀 장	박운규 (02-3145-8288)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7160)
	디지털혁신국	담당자	팀 장	이수인 (02-3145-718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충진 (02-3145-8370)
	금융안정지원국	담당자	팀 장	유상범 (02-3145-840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종오 (02-3145-6770)
	중소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오수진 (02-3145-6775)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은순 (02-3145-7550)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이성복 (02-3145-7440)







### 참고 1 관련 협회별 책임자·담당자 및 연락처

협회	책임자	담당자
은행연합회	본부장 김경민 (02-3705-5050)	박영상 상생금융부장 (02-3705-5290)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 천성대 (02-2003-9013)	임병태 증권2부장 (02-2003-9110)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김민기 (02-2011-0711)	이경원 소비자보호부장 (02-2011-0742)
저축은행중앙회	수석상무 최병주 (02-397-8602)	조부제 법규제도부장 (02-397-8710)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천승환 (02-2262-6697)	유제상 상품지원부장 (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김지훈 (02-3702-8524)	박상조 경영지원부장 (02-3702-8571)
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 이재선 (02-6710-0802)	심용식 기획부장 (02-6710-0810)
신용정보협회	상무 기경민 (02-3775-2863)	최영삼 신용사업본부 부장 (02-3775-2861)
농협중앙회	본부장 장종환 (02-2080-5056)	조영철 여신관리국장 (02-2080-3660)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 조용록 (042-720-1860)	한동권 여신지원팀장 (042-720-1871)
수협중앙회	부대표 문진호 (02-2240-2150)	이옥진 상호금융본부장 (02-2240-2200)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상무 김용배 (02-3434-7123)	김경희 상호금융여신부장 (02-3434-7230)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박재경 (02-2145-9121)	이제광 여신관리1부장 (02-2145-9410)

### 참고 2 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FAQ

#### 1. 내가 채무자인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 □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 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ㅇ 서면(앱, 문자, 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금융회사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채무조정을 요청했을 때 거절되는 경우가 있나요?

- □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ㅇ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검토는 하되, 수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사항입니다.

### 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대해 합의한 이후에 그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 □ 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4.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추심연락 받는 것을 유예할 수 있나요?

- □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 어지는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 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 이를 통해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추심연락이 이루 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추심연락 횟수에도 제한이 있나요?

-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를 통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한 추심에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은데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ㅇ 이를 통해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 8.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줄어드는 것인가요?

□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사례

→ [가상사례] 대출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잔액 10 + 미도래잔액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 9.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치 전에 어떻게 통지하나요?

-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에 통지시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포함한 서면 교부의 방법 으로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 방식을 새로이 인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 10.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등 주요 조치 전에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합니다.
  - 이 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채무자의 주소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 또한, '25년까지 내용증명 우편 외에 등기우편으로도 통지 가능하 도록 부칙 특례를 두어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 습니다.